

신도 증명서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		
종교단체 사항	종교단체명				
	주소		전화번호		
	법인(단체)등록 여부 [] 등록 [] 미등록		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		
신도 증명사항	신청인	종교단체 소속일자	년 월 일		
		정식신도 인정일자	년 월 일		
	가족	성 명	신청인과 관계	종교단체 소속일자	정식신도 인정일자

위와 같이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○○단체장 직인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이 증명서는 대체역 편입심사에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되므로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종교단체 사항은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공식명칭, 주소 및 연락처, 해당 종교단체의 법인(단체)등록 여부 및 등록된 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록합니다.
- 신도 증명사항 중 신청인의 종교단체 소속일자는 신청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에 최초로 소속된 일자를 기록하고, 신청인의 정식 인정일자는 세례, 침례 등 종교단체에서 정식 신도로서 자격을 갖게 된 일자를 기록합니다.
- 가족의 신도 증명사항은 신청인의 부모, 형제자매 중 동일한 종교를 가진 경우 각 항목별 내용을 기록합니다.
- 각 난에 기록사항이 없으면 "해당 없음"으로 기록합니다.
- 담당자란에는 반드시 증명서 발급담당자의 성명을 기록합니다.
-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은 「병역법」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.